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

□ 제정 : 2022. 3. 1.

□ 개정: 2023. 6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,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- ① "개인형 이동장치"란 「도로교통법」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.
- ② "도로"란 「도로법」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 내 도로에 적용하다.

제4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총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)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(학내 구성원으로 한정함)는 운행 전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의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안전관리 담당자(교직원: 총무팀, 학생:학생지원팀)에게 등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 한다.

-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.
-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속도 제한 등)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0km/h 이하로 한다.

- 제8조(안전거리 확보 등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, 개인형 이동장치, 자전거, 기타(이하"차량 등"이라고 한다)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,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
-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보행자의 보호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.
-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.
-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주차 장소의 제공) 총장은 학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지정하여야 한다. 제11조(주차의 금지)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교차로 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- 2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
- 3.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
- 4.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
- 5.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
- 6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- 가.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
 - 나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
- 7.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
- 8. 건축물, 구조물, 녹지공간 위
- 9. 도로, 보도, 테라스, 주차장,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
- 10. 경사로, 계단 또는 연석 등
- 11.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- 제12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① 대학의 시설물 관리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- ② 총장은 제1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관리자에 의하여 압수될 수 있다.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,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또한 대학은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 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·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학홈페이지 등에 게 시하여야 한다.
- ⑤ 총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
- 제13조(안전운전 의무)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,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,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4조(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(이하 "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하다.
- ②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- 1. 신규 안전교육: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
- 2. 정기 안전교육: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
- ③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.
- ④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 내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야 한다.
 - 1.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.
- 2. 대학 내 신호등, 교통표지판,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- 3. 포트홀, 움푹 패인 곳, 장애물, 공사장, 보행자,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

4-2-47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

유행하여야 한다.

- 4.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·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- 5.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6.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.
 - 가.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
 - 나.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
- 7.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정지하고 있는 경우
 - 나.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
- 8.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9.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.
- 10. 운전자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, 기타 개인보호장비(손목보호대, 무릎보호대, 팔꿈치 보호대 등)의 착용도 고려하여야 한다.
- 11.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 손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.
- 12. 학교의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임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해서는 아니 된다.
- 13. 개인형 이동장치를 건물 내로 반입할 수 없다.
- 14.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, 과로한 때,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.
- 15.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16.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사항에 따라 야 한다.
- ② 총장은 제 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 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6조(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) ①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

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,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,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,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안전사고의 조사) ① 주관부서 관리자는 총장에게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사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할기관에 신고한다.
-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- 1. 사고발생일시
- 2. 사고발생장소
- 3. 피해상황(사망자수, 부상자수, 재산피해규모)
- 4. 사고신고사유
- 5. 사고발생경위
- 6. 신고자(수속, 성명, 연락처)
- 7. 사고당사자(소속, 성명, 연락처)
- 제18조(지도단속) ① 교내의 교통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단속반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
- ② 총장 및 주관부서 관리자, 지도 단속반원은 지도단속 시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 착용,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 할 수 있다.
- 제19조(위반 시 제재) ① 매 학기 기준 학교 구성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헬멧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1회 위반 : 계도 조치
 - 2. 2회 위반 : 계도 조치 및 부서(학과)에 통보
 - 3. 3회 이상 위반 : 학교 내 3개월 탑승 정지
- ②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4-2-47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